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2. 16(금) 10:00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86호
- 나. 제 출 자 : 이인식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2. 2.
- 라.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 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안 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중복지원 제한(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 「청년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2. 5. ~ 2024. 2. 13.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1)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2)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 직접적인 상위법령은 없으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및 돌봄 가족을 대상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
-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돌봄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운영의 정보 및 데이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2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2. 12. ~ '23. 3.)

- 조사대상 : 서울 거주 14~34세 청소년
- 조사방법 : 1차 설문조사(온·오프라인), 2차 심층면접(FGI)
- 가족돌봄청년 추정인원 : (서울시) 900명, (금천구) 22명

⇒ '23. 12. 29. 서울시 조례 개정 - 대상연령 9세 이상 34세 이하로 변경

-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안 제7조)
 - 돌봄 지원, 생활안정, 심리정서적 지원 등 복지대상으로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마련함
- 5)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안 제9조 및 제10조)
- 6) 중복지원 제한(안 제11조)
 - 조례의 지원서비스와 유사한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검토의견

- 가족돌봄 청년은 일상 가사, 환자 수발 등 돌봄 자체의 어려움은 물론 또래 사이에서의 고립감 심화, 생계유지의 어려움, 미래투자의 부족 등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런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하고 각종 복지혜택을 지원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대상자 발굴 및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